

인사규정 제8조 채용결격사유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한 사람
9.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